2022 SPA 형사소송법
판례 · 기출증보판 정오표(1쇄 기준) 3

[1권]

p.142 ⓗ '검사는 피고인이 된 ~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(동조 제6항).' 전체 삭제

p.143 key point – 하단,

'(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증명/기억환기용 사용)' ⇨ '(기억환기용 사용가능)'으로 수정

p.151 문6번 해설④의 내용을 아래 내용으로 교체

④ 검사는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과 조사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(규칙 제134조의 2 참고).

p.169

㉣ '체포 전에 피의사실의 요지,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(제200조의 5).' ⇨ ㉣ '체포 전에 피의사실의 요지,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(제200조의 5),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(수사준칙 제32조 제1항).'로 수정

p.174

(3) ① ㉡ 긴급체포를 할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, 체포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,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(제200조의 5),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(제200조의 3 제3항). ⇨ ㉡ '긴급체포를 할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, 체포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,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(제200조의 5),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(수사준칙 제32조 제1항).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(제200조의 3 제3항).'로 수정

p.174

(3) ①㉡ 6줄 ~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. (×) 15. 순경 1차 ⇨ '~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. (○) 15. 순경 1차'로 수정

p.182

㉡ ⓐ ~ 즉, 피의사실의 요지 및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다(제200조의 5). 05. 순경, 10 · 14 · 16. 순경 2차, 10 · 15 · 16. 경찰승진, 16. 7급 국가직 · 경찰간부 ⇨ ⓐ '~ 즉, 피의사실의 요지 및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(제200조의 5), 05. 순경, 10 · 14 · 16. 순경 2차, 10 · 15 · 16. 경찰승진, 16. 7급 국가직 · 경찰간부,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(수사준칙 제32조 제1항).'로 수정

p.209

㉣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,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(제200조의 5, 제209조). ⓘ 진술거부권 고지× 08. 순경 ⇨ 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,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(제200조의 5, 제209조),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(수사준칙 제32조 제1항).로 수정하고, ⓘ 진술거부권 고지× 08. 순경은 삭제